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39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이병진 · 허성무 · 송옥주
이원택 · 이상식 · 윤준병
김태선 · 소병훈 · 한정애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할 경우 그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으로 인하여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전비품 대여 또는 양도의 필요성 및 반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 회 동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 제적 분쟁으로 인하여 전쟁 또 는 내전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 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 게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 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 <u>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 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해 당 국가</u> <u>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u> <u>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 를 요청할 때에는 전비품 대여 또는 양도의 필요성 및 반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